

특성화추진위원회 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성결대학교(이하 "본 대학교"라 한다)의 건학이념에 기초하여 본 대학교의 고유성과 차별성,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시대변화에 따른 경쟁력을 강화하도록 특성화 추진에 기여할 특성화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구성) ① 위원회는 조교수 이상의 교원 중 7인 이내로 구성하되 교무처장, 기획혁신처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기획혁신처장으로 하며, 당연직 위원이 아닌 위원은 위원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임명한다.

③ 위원회의 간사는 기획혁신과장으로 한다.

④ 연구 및 실무지원을 위하여 위원회 산하에 실무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으며 교무학사과장, 기획혁신과장, 대학원 교학과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3조 (임기) 당연직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결원으로 인하여 임명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제4조 (기능) 위원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연구, 심의 건의한다.

1. 고유성과 차별성, 일관성의 정책 설정
2. 특성화 정책 수립에 관한 사항
3. 특성화 정책 연구에 관한 사항
4. 기타 위원회에 부의되는 사항

제5조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정책추진부서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③ 개최 정족수는 재적위원 과반수이상의 출석과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 (보고) 위원회는 본 회의에서 심의된 사항을 위원장은 총장에게 3일 이내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 (협조요청)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부서(기관)에 자료의 제출, 의견수렴 및 기타에 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8조 (예산) ①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에서 수행하는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연구비(수당)을 지급할 수 있으며 외부 위원의 경우, 회의비를 지급할 수 있다.

특성화추진위원회 규정(8-12-1)

②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 운영과정에서 소요되는 기타 제경비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제9조 (보칙) 이 규정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위원회의 결정에 의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03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규정(제2조, 제8조, 제9조)은 2014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규정(제2조)은 2018년 11월 19일부터 시행한다.